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사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주)푸드닥터에프앤비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채육식당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1180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8.0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22

채육식당 가맹사업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312, 3층(군자동)

대표번호

1533-1950

이메일

main@fooddoctorfnb.kr

팩스번호

02-467-9293

홈페이지

www.채육식당.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5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9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 가맹사업의 연혁	
3. 가맹사업의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6.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3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4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0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6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8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0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41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별첨서류

[별첨1] 구입요구품목(설비/집기)

[별첨2]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별첨3]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푸드닥터 에프앤비	채육식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312, 3층(군자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12.02.	2021.12.14.	김태완	1533-1950	02-467-9293
	법인등록번호	110111-8113807	사업자등록번호		157-81-0257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태완	채육식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312, 3층(군자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태완	1533-1950	02-467-929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채육식당 광진점	채육식당	2021.12.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9길 35, 지하2층 B202-10호(화양동, 광진코지웰)	김태완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채육식당	채육식당은 한식 전문점입니다.
상 호	채육식당 OO점	보통 지역명으로 표시
영업표지 (상표)		채육식당 브랜드의 로고, 심볼 등록일: 2023.02.27. 등록번호: 40-1982340-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1,138,170	884,887	253,283	2,395,910	130,639	118,679
2023년	789,577	654,974	134,603	1,553,226	52,017	5,063
2022년	285,970	156,430	129,539	1,216,892	-56,247	68,262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이름	사업경력
------	----	------



관련여부		기간	상호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태완	2021.12.14. ~ 현재	(주)푸드닥터 에프앤비	대표자	가맹사업 총괄
		2021.03.17. ~ 2021.12.10.	채육식당 광진점	대표자	가맹사업 총괄
		2020년 3월 ~ 2021년 3월	채육식당	대표자	채육식당 브랜드테스팅매장 운영
		2018년 6월 ~ 2020년 2월	푸드닥터	대표자	외식업컨설팅 및 외식업메뉴개발 R&D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직전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12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출원인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	2023.02.27.	40-1982340-0000	김태완	2033.02.27.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사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1.08.15.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04.16)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채육식당 광진점	채육식당	김태완	2021.08.15. ~ 2021.12.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9길 35, 지하2층 B202-10호(화양동, 광진코지웰)
(주)푸드닥터에프 앤비	채육식당	김태완	2021.12.14.~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312, 미림빌딩 3층(군자동)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채육식당	한식	입맛대로 채육세트, 한돈 제육정식, 갈비 제육정식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4.12.31.			2023.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	4	2	11	9	2	8	7	1
서울	2	1	1	4	3	1	4	3	1
부산	1	1	-	2	2	-	2	2	-
대구	-	-	-	-	-	-	-	-	-
인천	2	2	-	1	1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	1	2	1	1	2	2	-
강원	-	-	-	1	1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1	1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4년	9	1	-	6	-	4
2023년	7	7	1	4	-	9
2022년	4	7	1	3	-	7

6.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채육식당]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 하였습니다.

8.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직전연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영업기간
2024년	4개	42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 말 채육식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총액만 기재하였고 그 근거는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입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VAT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판촉	-	2024.01.01.~12.31.	54,836	54,836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을 발행해 가맹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푸드닥터에프앤비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 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100만원	계약체결과 동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교육비	550만원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1,650만원			

2) 보증금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VAT없음)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보증금	200만원	계약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채무 담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 포함)	
	신규 가입자	양수인



가맹비	1,100만원	-
교육비	550만원	550만원
보증금	200만원(VAT없음)	200만원(VAT없음)
합계	1,850만원	750만원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79.3㎡기준 (24평)	3.3㎡당 금액			
인테리어	협력업체	3,600만원	150만원	계약체결과 동시	발주 또는 시공 전 계약취소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간판		점포별 상이	-			
홀 의탁자						
설비/집기	협력업체	1,850만원	-			
초도물품비 / 원·부재료	(주)푸드닥터F&B	200만원	-			
총계		5,450만원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상기 비용 외 점포 상황에 따라 내부철거, 닥트, 전면윈도우 및 창호신설, 전기증설, 화장실, 냉/난방, 가스 증설, 소방, 대형건물등의 특수요구사항, 컴퓨터 등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최소 점포 기준 79.3㎡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점포의 입지선정과 계약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9)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계약서상의 가맹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계약서상의 가맹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계약서상의 가맹금의 50%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지급대상
로열티	매월 33만원	CMS(자동이체)	영업표지 사용대가	가맹본부
POS	별도 계약	별도 협의	별도 협의	(주)푸드테크
지연이자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가맹본부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광고/판촉비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 교육비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330만원(VAT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가맹계약서 제35조)

1."을"은 "갑"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 2."을"은 "갑"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을"은 협력업체 또는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지원받은 품목의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4."을"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시스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 5."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을"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이며, "을"은 이를 삭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갑"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6."을"은 제 4조에서 규정한 가맹점의 영업표시인 [채육식당] 로고의 사용을 금한다.
- 7."을"은 메뉴명, 메뉴 이미지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 8.매장 전화번호의 [채육식당]상호 및 홍보매체물의 상호 등을 변경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직전연도 기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구입해야하는 주요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

-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채육식당]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고 **판매메뉴 및 가격은 상기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하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한식을 주요상품으로 판매하는 외식업	채육식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서에 기재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네이버지도-거리측정 기준 귀하의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5k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②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지역 변경 완료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둘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42%	58%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채육식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문 제6조 제2항 (계약갱신 거절 사유)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



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조문 제6조 (계약기간과 갱신)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5-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⑥ 귀하는 계약갱신시 다음 각 호를 계약갱신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귀하는 당사에 대한 원·부재료·상품대금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2. 계약갱신시 당사와 귀하는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조문 제34조 (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제8조 내지 제15조의 이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 지급에 관하여 "을"이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조문 제26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조 제3항에서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8조 및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또는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제17조 규정에 의한 수시교육 및 재교육 등 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23조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26조 복장 규정 및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제29조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 통지 및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30조 규정의 광고비 부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판촉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판촉 활동을 하거나 팜플렛, 리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을 제작하여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7조 제1항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본 계약의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귀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2항 (해지 사유)

1. "갑"이 제5조에서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2. "갑"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4항 (즉시해지 사유)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귀하는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3항 (즉시해지 사유)

1. "갑"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갑"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60일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3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2)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 **330만원(VAT포함)**을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의 존속 중은 물론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귀하와 제3자의 명의(주주로 참여하는 것 포함)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내 [채육식당]과 동일 및 동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금지 되는 업종	제한기간	제한지역
한식을 주요상품으로 판매하는 외식업	가맹계약의 존속 중,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점포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내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①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4:00	연중무휴	※ 상권에 따라 사전협의

② 귀하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하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사유가 정당할 경우 승인해드립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상권에 따라 상이	직접 근무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자

※ 권장 종업원 수는 상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 ①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에 의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위생상태, 회계관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가 전항에 따른 점검이나 기타 가맹점의 재고·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당사가 필요 시 소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가맹점사업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관하여 건실한 자금관리 관행을 가져야 하며 당사가 요구할 시 판매실적 등을 당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작성하여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 및 지역단 위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	-	-
	상품 광고 + 브랜드 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광고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절차 진행 → 광고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 광고비 확정	-
	상품 광고 +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50%	50%		
공동 판촉 활동		기획비용	가맹점에서 소요되는 판촉물의 제작비용 및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행사계획 공고 →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실시 →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 선정하여 최종 부담액 확정	
가맹점 개별 광고·판촉		-	100%	가맹본부에 광고·판촉계획안 발송 →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1조 (광고)

⑥ "을"은 자기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광고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계약조문 제32조 (판촉)

② 개별 판촉 활동은 "을"이 가맹점 오픈 후 단독으로 시행하는 판촉 활동으로서 "을"은 매장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판촉 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갑"의 지도와 통제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판촉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리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채육식당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 ①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을"은 자신의 피고용인, 가족,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당해 행위자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며 "을"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 ③ 본 조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의 예정 등)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9조(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3조 제1항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위반횟수당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점매입한 품목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을"이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갑"이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이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철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⑥ "을"은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갑"에게 사전 통지한 뒤 합의 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종료에 합의가 되었으나 별도의 합의기준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잔여 가맹계약 일 수 X 3만원	
⑦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⑧ "갑" 또는 "갑"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상담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0	
점포개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4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34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계약 체결	D-32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D-34	D-31~6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기기장비 및 POS 조작 - 조리교육	D-20~10	
개점 준비	- 인테리어 시설, 집기, 초도물품 등 본사 직원 및 점주 체크	D-2~1	
개점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4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 ① "갑"과 "을"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갑"의 임직원 포함)과 "을" 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 해결 노력을 한다.
- ② 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본 계약에 대한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른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해당사항 없음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채육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최소시간	비용(VAT포함)	필수여부
최초교육 (개점 전)	점포운영, 고객응대, 서비스, 조리교육 등	실습교육	15일	330만원	필수
수시교육 (개점 후)	점포운영 및 서비스교육	실습교육	가맹점사업자 마다 상이	필요시 통지	필수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채육식당”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5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0조 (개점 전 교육·훈련)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다음과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채육식당 광진직영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7길 18, 2층(화양동)
2	경기	채육식당 다산직영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에이씨동 01-0010호(다산동,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의 직영점 평균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25개월	직영점 2개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 사업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구입요구 품목(설비/집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 품목 중 강제품목은 반드시 가맹본부(협력업체 포함)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사입을 금지하며, 권장품목은 귀하가 직접 구입하거나 요청시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권장품목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맞게 구입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사용 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필수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전자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는 방법 중 하나로 통지해드립니다.

[별첨2] 가맹본부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공용)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	(인)	영업표지	채육식당
------	-----	------	------

■ 아래 빈칸에 “반드시”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 라고 작성해주세요.			
	작성해주세요 ⇒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체크V)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No.	상호(가맹점명 기재)	소재지(주소 기재)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령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본부에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당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